우리 나라 헌법과 더불어 불멸할 백두산절세위인들이 업적

김 희 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의 혁명업적을 옹호고수하는데서 수령의 사상과 리론,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그것을 혁명실천에 철저히 구현하는것이 중요합니다.》(《김정일선집》 중보판 제12권 150폐지)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옳바로 제정하는것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근본요구이다. 그것은 헌법이 해당 국가정치의 집중적반영이며 기본실현수단으로서 헌법에 국가사회제도 의 성격과 면모가 전면적으로 구현되기때문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은 인민적이며 혁명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우리의 헌법과 더불어 빛나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업적과 뗴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우리 나라 헌법과 더불어 불멸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헌법을 제정하도록 하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헌법제정사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빛나게 실현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우리 인민을 주권국가의 당당한 공민으로 내세우기 위하여 북과 남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선차적문제인 헌법제정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선 헌법제정과 관련한 과학적인 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시여 헌법건설의 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6(1947)년 11월 20일 조선림시헌법제정위원회 제1차회의에 참가한 일군들과 하신 담화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헌법을 작성하자》에서 우리의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철저히 전체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부합되는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헌법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헌법에 담아야 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헌법에서는 우리 나라가 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되여야 한다는것과 인민들이 직접 선거한 대의원들로 구성되는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제도와 국가소유와 협동단체소유, 개인소유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제도를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헌법에서는 우리 인민이 보장받고있는 기본권리와 공민의 의무리행에 대하여서도 옳바로 규제하여야 하며 우리의 국가기관체계가 철저히 인민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인민회의를 중추로 하는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국가기관체계로 되여야 한다는것과 국가예산편성문제, 민족보위문제, 국장, 국기, 수도와 같은 국가의 상징들을 명백히 규제할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헌법의 구성체계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참신하게 하며 우리 인민이 민주주의혁명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뿐만아니라 우리 국가가 앞으로 해야 할

기본혁명과업도 다 규제하여야 한다고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우리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민주주 의적절차에 따르는 헌법제정사업과 전인민적토의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6(1947)년 11월 북조선인민회의 제3차회의를 소집하시고 헌법초안작성을 위한 조선림시헌법제정위원회를 조직하여주시였다. 조선림시헌법제정위원회에서 작성된 헌법초안은 북조선인민회의 제4차회의에 제출되였으며 여기서는 헌법초안을 전인민적토의에 붙일것을 결정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민주주의적절차에 따라 작성된 헌법초안은 발표되자마자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지지와 찬성을 받았다.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지도와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나라의 첫 헌법 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은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민주주의적이며 인 민적인 헌법으로 될수 있었다.

우리 나라 첫 헌법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도 깃들어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새 조국건설구상을 받들어 정력 적으로 활동하시는 속에서도 헌법에 규제할 우리 공화국의 국장, 국기도안작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37(1948)년 봄 국장, 국기도안작성자들을 만나시여 우리의 국장, 국기는 북조선인민들뿐아니라 남조선인민들에게도 다 접수될수 있고 위대한 수령님의 새 조국건설구상과 방침이 다 반영되게 제정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의도,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념원이 반영된 아름다우 면서도 무게가 있고 존엄이 있는 우리 공화국의 상징들이 마련되게 되였으며 그것이 우리 헌법에 그대로 규제되였다.

우리 나라 헌법과 더불어 불멸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의 위력한 법적무기인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하여주신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작성하신 주체의 사회주의정치헌장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의 원리가 전면적으로 구현된 주체의 헌법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시였다.

지난 시기의 헌법리론들에서는 헌법이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고착시키는 법으로 인정되여왔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제헌가들도 헌법은 강령과 달리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현재 이룩한 성과를 고착시키는것이라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헌법이 사회주의위업수행의 강력한 무기로 되자면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뿐아니라 우리 국가가 앞으로 수행하여야 할 과업과 방도까지도 명백히 규제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이로부터 사회주의헌법은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미 이룩한 성과뿐아니라 우리 공화국의지도사상, 우리 국가의 성격과 특징, 투쟁목적과 과업, 정치, 경제, 문화, 국방분야에서 국가가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원칙들과 국가기관들의 임무와 활동원칙, 공민이 부여받는 기본권리와 반드시 리행하여야 할 의무, 그 실현방도를 정확히 규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헌법이 국가의 기본법인것만큼 국가기관체계를 위주로 규제할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국방분야의 모든 원칙을 위주로 하면서 여기에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체계를 배합하여 규제하여야 한다고 명백하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사회주의정치헌장인 사회주의헌법을 몸소 작성집필하 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나는것과 함께 이미 있던 인민민주주의헌법을 사회주의헌법으로 발전시킬것을 발기하시고 1960년대 중엽에 헌법작성을 위한 기초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100개의 조항도 넘는 헌법의 조문들을 표현 하나, 문장 하나에 이르기까지 친히 집필하시였으며 그것을 헌법작성기초위원회 위원들과 진지하게 협의도 하시면서 손수 완성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작성집필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주체의 헌법사상과 리론이 집대성되여있고 사회주의헌법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한 기념비적문헌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도 뜨겁게 깃들어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헌법에서는 기존헌법이 제정한 방식을 답습하여 종래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일군들의 이름으로 공화국의 훈장이나 영웅칭호가 발표되는 편향이 없도록 국가기구체계를 고쳐 규제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를 위하여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주석제를 헌법적으로 고착시켜야 하며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에 따라 위대한 수령님을 국가주석으로 높이 추대하고 우리 인민들에 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의 표시인 국가의 정령과 결정은 오직 국가주석이신 수령님의 존함으로 발표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대로 주석제가 헌법적으로 고착되게 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국가주석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실현하는 법적무기로 되게 되였다.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집필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채택, 공포되였다.

그후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지도밑에 주체81(1992)년 4월 9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새롭게 수정보충되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헌법은 변화된 대내외환경속에서도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는데 참답게 이바지하는 위력한 법적무기로 더욱 강화발전되게 되였다.

우리 나라 헌법과 더불어 불멸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인 류제헌사상 특기할 수령영생헌법을 마련해주신것이다.

수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는것은 사회주의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며 임무이다. 사회주의국가가 수령의 혁명위업,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자면 수령의 높으신 존엄과 권위를 법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수령을 국가의 최고수위에 영원히 높이 모셔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주의국가의 혁명적성격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영생헌법인 김일성헌법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상을 근본핵으로 하는 김일성헌법 을 제정할데 대한 력사적인 발기를 하시고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을 수정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건국업적을 헌법적으로 고착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헌법에 서문을 새로 설정하고 서문에서 우리 국가가 공화국의 창건자, 령도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국가이라는것을 법화하여 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와 함께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올린 주석 이라는 직함은 오직 수령님의 존함과만 결부시켜 부를수 있게 헌법적규제를 명백히 하도 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헌법의 서문에서 규제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건국사상과 불멸의 건국업적, 특출한 위인적풍모를 친필작성하시여 우리 헌법이 **김일성**헌법으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갖춘 대기념비적문헌으로 빛나게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헌법에서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를 규제함 으로써 우리의 국가기구체계가 선군령도의 국가기구체계로 되도록 헌법완성의 원칙과 방 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령영생헌법인 김일성-김정일헌법을 마련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을 탁월한 사상과 령도, 고매한 덕성,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우리 인민과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수령영생의 헌법,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빛을 뿌리게 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101(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와 주체102(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는 우리 혁명의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맞게 사회주의헌법이 새롭게 수정보충되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을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우리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이 빛나게 실현될수 있게 되였다.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시고 위대한 장군님은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라는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으며 **김일성**동지 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 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라는것을 명백히 규제하였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을 영원무궁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국가로 끝없이 빛내이며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빛 나게 계승완성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절대불변할 신념과 의지를 그대로 반영 한것이다.

희세의 대성인이시며 정치원로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과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릴 김일성-김정일헌법을 받아안은것은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고있는 우리 인민만이 지닐수 있는 최상최대의 특전이며 더없는 자랑이다.

우리는 인류제헌사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적문헌인 **김일성-김정일**헌법을 위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선군조선의 존엄을 만방에 떨쳐나가야 할것이다.